

# 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9. 1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광영교 의원 외 5인
2. 건         명 :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따로붙임
4. 검토의견 : 따로붙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9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 
전문위원 연 정 수

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9월 1일 광명교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 
발의되어 2009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원  
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
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충 및 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 
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 
규정함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- 나.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6조)
- 다.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시설비 지원, 경영지원, 재정지원, 우선구매, 후견인제도 운영 등  
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 
까지)
- 마. 사회적기업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와 민간기업 등의 사회적  
기업 활동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부터 안 제  
14조까지)
- 바.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 
규정함(안 제15조)

### 3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
####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,
-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6조는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 내지 제12조는 시설비, 경영지원, 재정지원 및 우선 구매와 후견인 지정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안 제13조 내지 제14조는 사회적기업의 민간위탁사업 참여 우대와 민간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활동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5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 수행을 통해
-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과 이를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육성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- 따라서, 집행기관에서는 본 업무를 주관하는 노동관서의 지원사항과는 별도로,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,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-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통합은 물론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지원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